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장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3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5.

발 의 자: 장철민·조 국·박홍배

장종태 · 김한규 · 한정애

이인영 • 한병도 • 정진욱

민병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고,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.

그런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일부 기업 등이 「근로기준법」, 「남 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고용·근로·처 우 환경, 가족친화 직장환경 등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고도 인증이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인증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음.

따라서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고 보다 건전한 가족친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「근로기준법」 등 관계 법규 준수를 가족친화인증의 필수 기준으로 할 것을 현행법에 명시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 금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분기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 및 제17조의2). 법률 제 호

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인증의 기준에는 「근로기준법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규정 중 고용·근로·처우 환경,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와 관련된 법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7조의2 중 "조사할 수 있다"를 "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조사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2 %	/		
제15조(가족친화기업 등 인증) ①	제15조(가족친화기업 등 인증) ①		
~ ⑤ (생 략)	~ ⑤ (현행과 같음)		
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	6		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			
정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	<u>이 경우 인증의 기준에</u>		
	는 「근로기준법」, 「남녀고용		
	평등과 일・가정 양립 지원에		
	관한 법률」, 「양성평등기본		
	법」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		
	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그		
	밖의 법령에 따른 규정 중 고		
	용·근로·처우 환경, 가족친화		
	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와		
	관련된 법규로서 대통령령으로		
	정하는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		
	가 포함되어야 한다.		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		
제17조의2(인증의 사후관리) 여성	제17조의2(인증의 사후관리)		
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			
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			
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<u>조</u>	<u>여성</u>		
<u>사할 수 있다</u> .	가족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		
	라 분기별로 조사하여야 한다.		